

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 내용 안내

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□ 원리금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하는 기한이익 상실요건 폐지

○ 변경 조항 :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7조 제2항

○ 내용

- (현행) 채무 기간 중 이자 등의 지체회수가 총 4회에 달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 상실
- (변경) 해당 조항 삭제

□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해지되는 예금에 약정이자 지급

○ 변경 조항 :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, (기업용) 제10조 제5항

○ 내용

- (현행) 은행의 상계로 중도 해지되는 예금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을 적용
- (변경) 은행의 상계로 중도 해지되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 가입시 약정한 이율을 적용

□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 설명

○ 변경 조항 :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4조 제3항

○ 내용

- (현행) 대출약정시 별도 서면으로 약정이자,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설명
- (변경) 대출약정시 약정이자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 금리도 추가하여 설명(상품설명서 등으로 안내)

□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

○ 변경 조항 :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3조 제5항, 제4조 제2항
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제1조

지급보증거래약정서 (기업용) 제1조

○ 내용

- (현행) 평년과 윤년을 구분하지 않고, 1년을 365일로 보아 1일 단위로 이자 계산
- (변경)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아 1일 단위로 이자 계산

□ 감액, 정지사유 설명

○ 변경 조항 : 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제1조

○ 내용

— (현행) 감액, 정지 사유항목을 각각 설명

— (변경)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감액, 정지 사유 항목을 삭제, 공정위 표준약관 내용과 일치시킴.

□ 보증료 지급시기 및 방법 추가

○ 변경 조항 : 지급보증거래약정서 (기업용) 제1조

○ 내용

— (현행) 보증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아래 중 택일

1. 지급보증일에 지급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증료를 지급합니다.

2. 최초의 보증료는 지급보증일에 그 후의 보증료는 지급한 보증료의 계산 최종일 익일에 ()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.

— (변경) 선택할 수 있는 보증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(지급보증시마다 지급보증거래 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그 후의 보증료는 지급보증만료일 익일부터 ()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)을 추가, 공정위 표준약관 내용과 일치시킴.

※ 시행일 : 2013년 7월 1일

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